

4.2.15 폐과교원에대한인사규정

제정 2012. 03. 16.
개정 2016. 02. 26.
개정 2020. 08. 14.
개정 2020. 11. 06.
개정 2022. 06. 23.
개정 2023. 08.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구조개편에관한규정」에 의거 학과(부) 및 전공(이하 '학과'로 통칭) 폐지 결정 이후, 해당 학과 교원의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14.>

제2조(정의) ① '폐과결정일'은 본교 「학사구조개편에관한규정」이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학과에 학과폐지를 통보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6.02.26.>, <개정 2020.08.14.>

② '폐과일'은 모집정원이 4년 연속 0명이 되는 학년도 개시 직전일을 말한다. <신설 2016.02.26.>

③ '폐과교원'은 본조제1항 '폐과결정일' 이후 해당학과 소속 교원을 말하며, 폐과결정과 동시에 폐과교원이 된다. 단, 최근 1년간 해당학과 전공과목을 2과목 이상 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2.26.>

제3조(폐과교원에 대한 인사) ① 폐과교원은 폐과일에 직권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과교원은 폐과결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각 호의 1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26., 개정 2020.11.06.>

1. 신설학과 개설

2. 소속 변경(타 학과 재배치) <개정 2016.02.26.>

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6.02.26.>

4. 희망퇴직

② 제1항 단서 각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총장은 제2조 제2항의 폐과일이 도래하지 않은 폐과교원 중 교원 확보율 및 대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개정 2023.08.02.>

제4조(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절차) ①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1회에 한하며, 소속변경 신청은 폐과결정일 이후 15일 이내 1회, 직권면직 전 1회 가능하다. <개정 2022.06.23.>

② 소속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폐과 교원이 신설학과 개설을 희망할 경우 신설계획서를 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학과신설절차에 따라 학과 신설이 최종 확정된 후, 소속변경 절차를 거친다.

2. 폐과 교원 중 타 학과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원 소속학과 변경 신청서(서식1)와 소속변경 요청에 따른 실천계획서(서식2)를 폐과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되, 전공이 일치하는 교원은 학위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26.>

3. 교무처장은 교원 소속학과 변경 신청서(서식1)과 소속변경 요청에 따른 실천계획서(서식2)를 접수하는 즉시 폐과교원이 희망하는 학과에 소속변경 신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23>

4. 제3호의 해당 학과장은 소속변경 신청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별지 서식4의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23>

5. 교무처장은 폐과 교원의 소속학과 변경 승인을 위하여 폐과교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호 번호변경 2022.06.23.>
6. 폐과교원 조정위원회는 교무처장으로부터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신청서」와 「소속변경 요청에 따른 신청계획서」,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의견서」를 제출받아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서식5)에 의한 폐과교원 소속변경 평정을 실시하고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때, 폐과교원이 신설 예정 학과로 소속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평정은 서식6에 의한다. <신설 2022.06.23.>
7. 총장은 폐과교원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참고하여 소속변경 대상자 및 탈락자를 확정하고,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호 번호변경 2022.06.23.>
8. 폐과교원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교원은 직권면직 전 소속변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02.26., 2022.06.23.> <호 번호변경 2022.06.23.>
9. 소속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 중 전공 불일치 교원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단,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2.26.> <호 번호변경 2022.06.23.>
10. 자격을 갖춘 교원에 대한 소속 변경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 <호 번호변경 2022.06.23.>

제5조(폐과교원 조정위원회) ① 폐과 교원의 소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과교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유고시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의 행정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과 총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02.26., 2022.06.23.>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신규 보직이 임용될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에 대한 임용 절차없이 신규 보직자에게 보직 임용일자로 위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보직면직자는 면직일 익일자로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희망학과(부)의 적정 교원확보율의 범위 내에서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서식5 또는 서식6)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희망학과에 대한 기여도, 학위취득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22.06.23.>
- ⑤ 위원회는 소속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희망학과 학과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의 2(폐과교원의 소속변경 및 면직심의기준) ①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및 면직심의를 위한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항 신설 2022.06.23.>

1.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서식5 또는 서식6)에 의한 평점 80점 이상: 소속변경 승인
 2. 70점 이상 80점 미만 : 위원회에서 소속변경 승인 여부 심의
 3. 70점 미만 : 소속변경 불허
- ② 소속변경 대상자는 학과별 적정 교원확보율의 범위 내에서 폐과교원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80점 이상(또는 위원회 소속변경 승인 교원)인 교원 중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폐과교원의 직권면직) ① 폐과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한다.

1. 소속변경 미 신청 교원
2. 소속 변경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박사과정 수료)기한을 초과한 교원
3. 직권면직 전 소속학과 변경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교원 <개정 2022.06.23.>

② 폐과교원의 직권면직 시점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소속변경 미 신청 교원은 폐과 일을 면직일로 한다. <개정 2016.02.26.>
2. 소속 변경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박사과정 수료)기한을 초과한 교원은 해당 학년도 말일을 면직일로 한다.
3. 교원인사위원회의 소속변경 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교원은 해당학년도 말일 또는 학과 학생의 재적인원이 0 명이 되는 학기말일을 면직일로 한다. <개정 2022.06.23.>

제7조(폐과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등) 폐과 교원의 신분 및 처우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폐과결정일 이후에는 정년을 보장 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26.>
2. 연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책정한다.
 - 가. 폐과교원은 학과폐지가 결정된 후 당해연도 포함 2년동안 교원업적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2년동안 매년 연봉은 직전연도 총연봉의 80%로 조정한다. <개정 2016.02.26.>
 - 나. 폐과교원의 연봉은 폐과결정일 기준 다음 학기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02.26.>
 - 다. 삭제 <2016.02.26.>
 - 라. 가 목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연봉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6.02.26.>
3. 삭제 <2016.02.26.>

제8조(희망퇴직) ① 희망퇴직이란 폐과결정일 기준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근무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스스로 조기 퇴직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퇴직신청서(서식 3)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희망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④ 희망퇴직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⑤ 희망퇴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희망퇴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희망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희망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희망퇴직 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2016년 2월 및 8월에 한하여 본 규정 제3조제4호 희망퇴직 대신 본교 「명예퇴직 규정」(4.2.18) 제3조의 2의 조기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폐과가 결정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는 시행일 당시 폐과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은 2023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교원에 대한 인사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0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부이행사항) 제3조제2항의 경우 폐과교원에 대한 재배치 절차는 「2023학년도 폐과교원 재배치·조기명예퇴직 세부지침」에 의한다.

소속변경 요청에 따른 실천계획서
(전공 학위취득,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

1) 담당 가능 교과목 [필수사항]

| 소속 변경학과 개설 교과목명 | 1학기 | | | 2학기 | | |
|--------------------------|-----|------|----|-----|------|----|
| | 전공 | 교과목명 | 학점 | 전공 | 교과목명 | 학점 |
| | | | | | | |
| 교양 | 전공 | | | 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양 | | | 교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전공일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사유]

3) 소속 변경학과 전공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취득 계획

4) 소속 변경학과에 대한 기여(전공교과목 감소율 등)

5) 기타

※ 실천계획서는 각 항목별 최소 A4 1매 이상씩 작성하십시오.

※ 증빙자료(논문, 과제물 등)는 별첨하십시오.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의견서

| 신청교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 항목(배점) | | 점수 | | 비고(의견) | | |
| 전공 일치도 (15점) | | 15점(일치) 7점(유사전공) 0점(불일치) | | ※학위취득계획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평정 | | |
| 변경 학과 기존교원과 전공 및 교과목 중복 여부 (10점) | | 책임시수 확보 정도에 따라 4점~10점 | | ※ 책임시수 충족 가능여부, 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 |
| 변경 학과 기여도 (5점) | | 1점 ~ 5점 | | | | |
| 합계점수 (30점) | | | | | | |
| 종합의견 | | | | | | |

폐과교원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전체 소속 교원이 합의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
| 소속교원 : | (인 또는 서명) |
| | (인 또는 서명) |
| | ⋮ |
| | (인 또는 서명) |
| | (인 또는 서명) |
| 학과장 : | (인 또는 서명) |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신설 예정 학과)

| 현소속 | | 직급 | | 성명 | |
|--------------|--|-----|----|----|--|
| 심사기준 | | 배점 | 점수 | 비고 | |
| 1. 전공의 일치도 | | 15 | | | |
| 2. 입시활동 결과 | | 15 | | | |
| 3. 강의평가 결과 | | 15 | | | |
| 4. 교수업적평가 결과 | | 15 | | | |
| 5. 연구역량 | | 20 | | | |
| 6. 종합평가 | | 20 | | | |
| 합계 | | 100 | | | |

20 년 월 일

폐과교원조정위원회 위원 : (인 또는 서명)
폐과교원조정위원회 위원 : (인 또는 서명)
폐과교원조정위원회 위원 : (인 또는 서명)
⋮
폐과교원조정위원회 위원 : (인 또는 서명)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1〉 희망퇴직수당 산정방식

| 정년잔여기간별 | 산 정 방 법 | 비 고 |
|-----------|---------------|-----|
| 1년이상 2년이내 | 월기본급 × 정년잔여월수 | |
| 2년이상 | 월기본급 × 24개월 | |

※ 월기본급은 월 호봉기본급 또는 총 연봉 중 기본연봉의 1/12을 의미한다.

※ 잔여월수의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평정 기준 - <신설 2022.06.23.>

○ 학과의견서

학과에서 제출한 학과의견서의 점수를 반영한다.

○ 전공의 일치도

전공 일치도는 신청자의 전공과 변경하고자하는 학과와의 전공 일치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 | 신설예정학부(과)로 소속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치(10점) · 유사전공(7점) · 강의가능(4점) · 불일치(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치(15점) · 유사전공(10점) · 강의가능(5점) · 불일치(0점) |

○ 입시활동 결과

- 입시활동 결과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입시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1년당 3점을 부여하며 최종 15점 만점으로 평정(만점 : 3점 X 5년 = 15점)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 | 신설예정학부(과)로 소속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이상 모집(3점) · 3명 ~ 4명 모집(2점) · 1명 ~ 2명 모집(1점) · 0명 모집(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이상 모집(3점) · 3명 ~ 4명 모집(2점) · 1명 ~ 2명 모집(1점) · 0명 모집(0점) |

○ 연구역량

연구역량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국내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논문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이 때 실적은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의 연구실적 산정 기준을 따른다.(신규임용일 이전의 실적까지 포함한다.)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 | 신설예정학부(과)로 소속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500점 이상(10점) · 우수: 400점 이상 500점 미만(8점) · 보통: 300점 이상 400점 미만(6점) · 미흡: 200점 이상 300점 미만(3점) · 매우미흡: 200점 미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500점 이상(15점) · 우수: 400점 이상 500점 미만(12점) · 보통: 300점 이상 400점 미만(8점) · 미흡: 200점 이상 300점 미만(5점) · 매우미흡: 200점 미만(0점) |

○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 결과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강의평가평점을 산술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 | 신설예정학부(과)로 소속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4.7점 이상(5점) · 우수: 4.5점 이상 4.7점 미만(4점) · 보통: 4.3점 이상 4.5점 미만(3점) · 미흡: 4.0점 이상 4.3점 미만(2점) · 매우미흡: 4.0점 미만(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4.7점 이상(15점) · 우수: 4.5점 이상 4.7점 미만(12점) · 보통: 4.3점 이상 4.5점 미만(8점) · 미흡: 4.0점 이상 4.3점 미만(5점) · 매우미흡: 4.0점 미만(0점) |

○ 교수업적평가 결과

- 업적평가 결과는 최근 5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신규임용 이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만 적용)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시 1년당 2점을 부여하며 최종 10점 만점으로 평정(2점 X 5년 = 10점)
- 신설예정학과(부)로 소속변경시 1년당 3점을 부여하며 최종 15점 만점으로 평정(3점 X 5년 = 15점)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 | 신설예정학부(과)로 소속변경 |
|------------|-----------------|
| · S등급(2점) | · S등급(3점) |
| · A등급(1.5) | · A등급(2점) |
| · B등급(1점) | · B등급(1점) |
| · C등급(0점) | · C등급(0점) |

○ 종합평가

신청자의 재직기간 중 경고이상의 징계처분 경력 및 희망학과에 대한 기여도, 학위취득 이행계획 등 소속변경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한다.(경고 이상의 징계 1건당 5점 감점)

〈별표 2〉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

| 정년잔여기간별 | 산정기간 |
|--------------|---|
|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 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

1.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정년잔여월수는 10년으로 한다.
2. 잔여월수의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5.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가. 호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84퍼센트의 67.5퍼센트를 적용한다.